

한·싱가포르 FTA

FTA협정관세신청 이렇게 하면 됩니다!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2동 920번지
정부 대전청사 1동(3~7층)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http://www.customs.go.kr>



한·싱가포르 FTA FTA협정관세신청 이렇게 하면 됩니다!

CONTENTS

I. 협정관세적용신청 절차 이해하기 4

-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입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한·칠레 FTA처럼 원산지증명서 제출로 협정관세가 적용되나요?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로 바뀐 이유는 뭔가요?
-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할 수 있나요?
- FTA 원산지증명서가 아닌데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산지증명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모두 제출하나요?
-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산지확인是谁가 하지요?
- 협정관세적용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지요?
- 수리후 협정관세적용신청 의사표시란 무엇인가요?
- 수리후 원산지증명서만으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II.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작성·제출 16

- 수입자의 무역계약전 확인사항
- 수입자의 원산지확인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작성
- 수입신고 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적용신청

III. 협정관세적용신청 절차도 24

- 수입신고 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적용신청

IV. 알아두면 좋은 정보 26

- FTA 관련 문의처
- FTA 관련 기관 홈페이지



I. 협정관세적용신청 절차 이해하기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입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수입자는 자신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생산·수출한 국가와 우리나라 사이에 FTA가 체결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 또한 당해 물품이 해당 수출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된 FTA의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FTA관세특례법령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싱가포르FTA 관세철폐 품목은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별표 협정관세 적용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수입자는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 발행되는 선적서류 외에 FTA 규정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하여 줄 것을 수출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한·칠레 FTA처럼 원산지증명서 제출로 협정관세가 적용되나요?



- 한·칠레 FTA에 의한 협정관세나 관세법에 의한 양허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직원이 원산지를 확인한 후 협정관세 또는 양허관세를 적용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한·싱가포르 FTA 및 그 이후에 발효되는 FTA에서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협정관세적용신청서란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로서 계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송부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적용 신청서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로 바뀐 이유는 뭔가요?



- 협정관세적용신청서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원산지를 확인한 후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종전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종이서류로 세관에 제출하여 왔습니다. FTA가 확대됨에 따라 종이서류 수입 건의 증가는 통관지체 요인으로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협정관세 적용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수입 P/L이 가능하도록 전산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작성의 근거가 됩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수입자의 상식이나 확신 또는 현품의 원산지표시 등은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작성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없이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게 되면 원산지 미확인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오류가 발생하며 그러한 경우 추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수입자는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입자원산지확인



원산지표시등 확인

FTA 원산지증명서가 아닌데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나요?



- FTA 원산지증명서와 양허용 원산지증명서는 각각의 FTA 또는 관세양허 협정의 규정에 따라 서로 다른 원산지기준과 원산지증명서 양식에 따라 작성되며 그 모양이 다릅니다.
- GSTP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FTA 협정관세를 신청한다면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 따라서 수입자는 해당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한·칠레 FTA와 GSTP 비교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칠레 FTA와 GSTP 협정의 원산지기준 및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서로 다릅니다.
- 만약 칠레에서 50% 이상 부가가치가 창출된 물품에 대해 GSTP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고 우리나라에서 FTA 협정관세가 신청된다면 한·칠레 FTA 원산지기준인 2단위 세번변경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 이런 이유로 한·칠레 FTA 원산지기준을 확인하고 발급된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칠레산 정제 동(HS7403.11)의 원산지기준 및 협정관세율

	한·칠레 FTA	GSTP
원산지기준	2단위 세번변경	칠레 부가가치비율 50% 이상
협정관세율('06년)	3.1%	4.5%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Issuing Number :

1: Exporter(Name and Address)						Tax ID No:	
2: Producer(Name and Address)				3: Importer(Name and Address)		Tax ID No:	
4. Description of Good(s)	5. HS No.	6. Preference Criterion	7. Producer	8. Regional Value Content	9. Country of Origin		
10. Remarks:							
11: Certification of Origin							
I certify th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re has been no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2 of the Agreement.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Name(Print or Type)				Title			
Date(MM/DD/YY)				Telephone / Fax / Email			



Certificate of Origin for GSTP

1. Good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번호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Issued in ----- (Country) ※ See notes overleaf			
4. For official use					
5. Tariff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for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2. Certificate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원산지증명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모두 제출하나요?



- 원산지증명서 제출에 따른 통관지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P/L이 가능한 협정관세 적용신청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이며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작성을 위한 근거 서류로서 수입자가 보관하는 서류입니다.
-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FTA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뿐 아니라 FTA관세특례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원산지 확인 및 신청서 작성



증명서 보관 및 신청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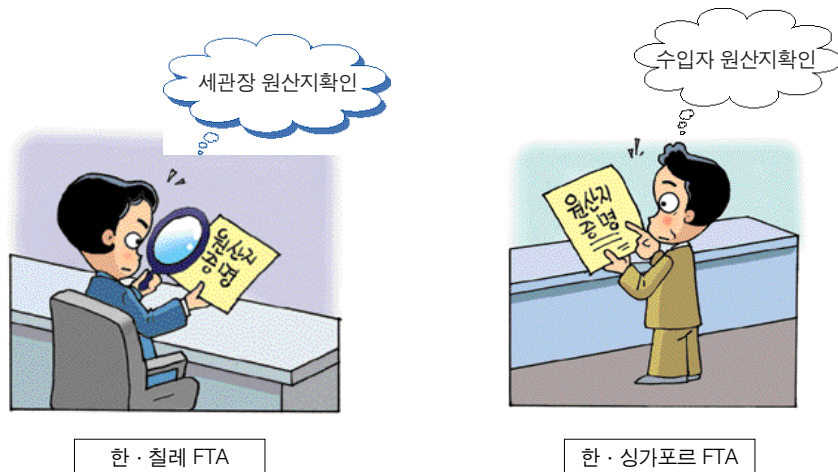
세관장 요구시 증명서제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산지확인 누가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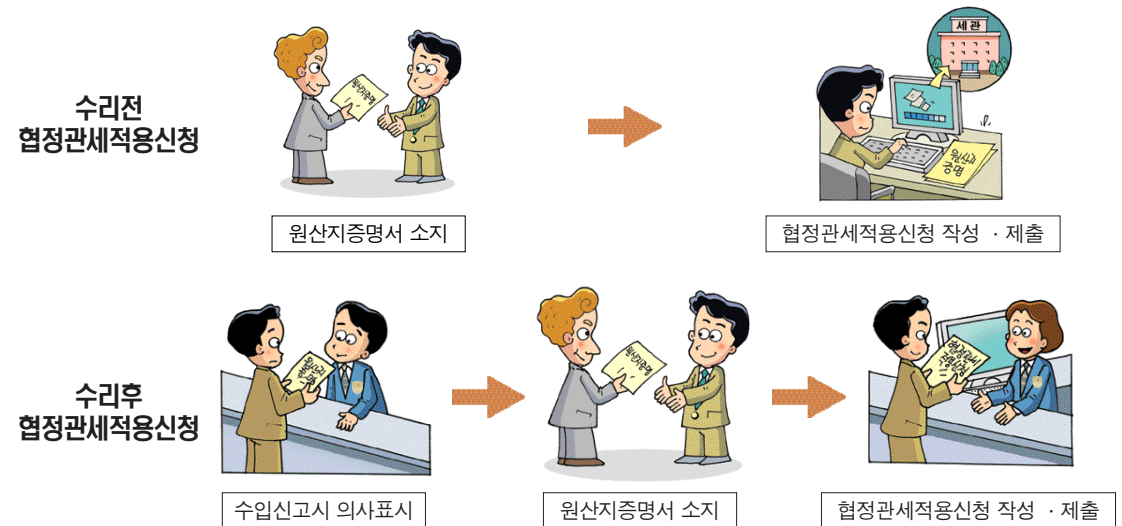
- 한·칠레 FTA의 경우 세관장이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규정한 양식 및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한·싱가포르 FTA부터는 수입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규정한 양식 및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따라서 협정관세 적용신청 제도 도입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인 요건확인인 주체가 세관장에서 수입자로 바뀌었습니다. 실질적인 원산지 확인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원산지조사를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



협정관세적용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지요?



-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과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원산지증명서를 갖춘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신청 :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 :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수입자가 수입신고하는 때에 수리후 협정관세를 적용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통관한 후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고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수리후 협정관세적용신청 의사표시란 무엇인가요?



-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까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리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수입신고서에 수리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 실행관세율로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하여야 합니다.
- 수입자가 수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갖춘 경우 이를 근거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한 경정을 청구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서



원산지증명서 소지·확인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작성·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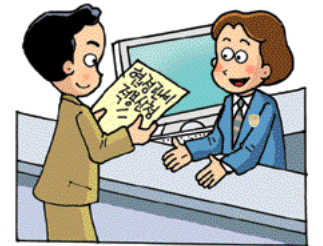
수리후 원산지증명서만으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수리전 또는 수리후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수입자가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수리후 협정관세를 적용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이 때 세관장은 수입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대상물품임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심사, 검사 등을 통하여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 따라서 수입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물품은 통관·심사시 협정관세 적용요건 및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물품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의사표시하지 않은 경우





II.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작성 · 제출

수입자의 무역계약전 확인사항

■ FTA 체결국 여부 확인

- 수입자는 자신이 수입하려고 하는 물품의 생산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FTA가 체결되어 발효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 FTA 체결국 현황 : www.fta.go.kr

■ 협정관세 적용품목 여부 확인

- 수입자가 수입하려고 하는 물품이 해당 FTA의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관세철폐 대상품목 즉 협정관세적용 대상품목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FTA 관세철폐계획은 전체 품목의 95% 안팎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나머지 5% 내외의 품목에 대하여는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칠레FTA의 경우 94.5%, 한·싱가포르FTA의 경우 91.6%)
☞ FTA별 협정관세 적용품목 : [관세청홈페이지](#)>통관종합서비스>수입통관>FTA

■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기재요령 확인

- 각각의 FTA 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정관세는 해당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작성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의하여 적용이 됩니다.
- 수입자는 자신이 수입할 물품의 생산국과 체결한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기재요령을 확인하고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국 수출자에게 당해 원산지증명서 송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FTA별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기재요령 : [관세청홈페이지](#)>통관종합서비스>수입통관>FTA



수입자의 원산지확인

■ 원산지 충족 가능성 확인

- 원산지조사 등을 통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게 됩니다.
- 따라서 수입자는 계약상대국 수출자의 생산시설 존재여부, 생산능력 및 수출실적 등을 파악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 충족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향후 원산지조사 등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배제 처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 수출자 홈페이지 조회, 확인요청 또는 현지방문 등

■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기재요령 정확성 확인

- 수입자는 계약상대국의 수출자가 송부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해당 FTA에서 규정한 양식인지 여부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해당 FTA에서 규정한 양식에 맞지 않거나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 원산지증명서를 계약상대국의 수출자가 송부한 경우 수입자는 잘못된 점을 수정하여 다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FTA별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기재요령 : [관세청홈페이지](#)>통관종합서비스>수입통관>FTA

원산지를 확인하신 다음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작성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양식 및 기재요령 확인

- 원산지확인을 마친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양식과 기재요령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양식 및 기재요령 : [관세청홈페이지](#)>통관종합서비스>수입통관>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작성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양식(고시 별지 제9호 서식)

- 수입자는 아래 양식에 의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처리기간 : 즉시)

①신고번호 : XXXXX-XX-XXXXXXX-X ②신고일자 : YYYY/MM/DD
 ③신청인 : (상호) XXXXXXXXXXXXXXXXXXXX (성명) XXXXXXXXXXXX
 (주소) XX
 (전자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④협정관세 신청구분 : [X] (A:수리전, B:수리후) ⑤신청일자 : YYYY/MM/DD

999란 ⑥품명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⑦모델 · 규격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⑧순중량 : 999,999,999 XXX ⑨HS부호 : 9999.99
 ⑩협정관세율(구분) : 9,999.99(XX XXXX) ⑪원산지 : XX
 ⑫원산지기준 : [X] (A:완전생산, B:세번변경, C:부가가치, D:조합기준, E:역외가공, F:기타)

⑬수출자 : (상호) XXXXXXXXXXXXXXXXXXXX (성명) XXXXXXXXXXXX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⑭생산자 : (상호) XXXXXXXXXXXXXXXXXXXX (성명) XXXXXXXXXXXX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⑮원산지증빙서류 : [X] (1:원산지증명서, 2:원산지확인서류) ⑯발급자 : [X] (1:기관, 2:수출자)
 ⑰기관명 및 종류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 (1:국가기관, 2:상공회의소, 3:기타)
 ⑱발급번호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⑲발급일자 : YYYY/MM/DD
 ⑳적출국 : XX ㉑적출항 : XXXXXXXXXXXXXXXXXXXX ㉒출항일 : YYYY/MM/DD
 ㉓환적국 : XX ㉔환적항 : XXXXXXXXXXXXXXXXXXXX ㉕환적일 : YYYY/MM/DD
 ㉖순중량 : 999,999,999 XXX ㉗분할수입 : [X] (Y:분할, N:전량) ㉘분할차수 : 999
 ㉙제수출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 [X] (Y:발급, N:미발급) ㉚제수출원산지증명서 발급국가 : XX

FTA관세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이를 통하여 원산지물품임을 확인하였기
위와 같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합니다.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기재요령(고시 별지 제9호 서식 기재요령)

항 목	작성요령	작성예
①신고번호	○ 수입신고서 항목의 신고번호를 기재	40620-01-0700105-
②신고일자	○ 수입신고서 항목의 신고일을 기재	2006/03/01
③신청인 - 상호 - 성명 - 주소 - 전자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납세의무자 관련사항 기재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를 기재 -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를 기재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자주소 기재 -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를 기재	- 모나리자(주) - 홍나리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5 - trade@monarisa.com - 112-81-66062
④협정관세 신청구분	○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수리전?후를 구분 기재 - 수리전 협정관세 적용신청 : A -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 B	○ 수리전 협정관세 적용 신청의 경우 : A
⑤신청일자	○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자를 기재	2006/03/01
⑥품명	○ 수입신고서 ㉒항목의 품명을 기재	Aviation engine oil
⑦모델 · 규격	○ 수입신고서 ㉓항목의 모델 · 규격을 기재	AEO-100S
⑧순중량	○ 수입신고 물품 중 협정관세적용신청 물품의 순중량을 기재 -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분할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순중량을 기재	○ 원산지증명서상의 유회유 1,000kg 중 500kg에 대해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 신청하는 경우 : 500kg
⑨HS부호	○ 원산지증명서상의 HS부호 6단위를 기재	2710.19
⑩협정관세율(구분)	○ FTA 협정관세율(관세율 구분부호) 기재 - 적용받고자 하는 FTA의 협정관세율과 해당 관세율구분부호를 기재	○ 한 · 싱 FTA에 따라 항공기용 유회유(2710.19-7110)을 수입한 경우 : 5.8(Z1)
⑪원산지	○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를 기재 - FTA 원산지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원산지	○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가 싱가포르인 경우 : SG
⑫원산지기준	○ 원산지물품의 종류를 기재 - 완전생산물품 : "A" 로 기재 - 세번변경기준 충족물품 : "B" 로 기재 - 부가가치기준 충족물품 : "C" 로 기재 - 조합기준 충족물품 : "D" 로 기재 - 역외가공기준 충족물품 : "E" 로 기재 - 기타 원산지기준 충족물품 : "F" 로 기재	○ 완전생산물품의 경우 : [A] ○ 세번변경과 부가가치 조합 기준의 경우 : [D] ○ 세번변경과 부가가치 조합 기준의 경우 - 세번변경 기준 적용 : [B] - 부가가치 기준 적용 : [C]
⑬수출자 - 상호 - 성명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체결상대국의 수출자 관련사항 기재 - 원산지증명서상의 회사명을 기재 - 원산지증명서상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 - 원산지증명서상의 주소지를 기재 - 원산지증명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ABC Corporation - JOELLE LAU - 55 Newton Road #10 Revenue House Singapore - 123-456-78910



항 목	작성요령	작성예
⑭생산자 - 상호 - 성명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결상대국의 생산자 관련사항 기재 - 회사명을 기재 - 대표자 성명을 기재 - 회사의 주소지를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로서 원산지 증명서상에 생산자가 기재되었거나 수입자가 자국에 있을 때에만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A Corporation - Tan Juan Fook - 371 Beach Road #10-11 Keypoint Singapore - 456-123-78910
⑮원산지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물품 확인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근거자료 기재 - 원산지증명서 : "1" 로 기재 - 원산지확인서류(사전심사서 포함) : "2" 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 : 1
⑯발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발급자를 기재 - 기관발급의 경우 : "1" 로 기재 - 자율증명(수출자 작성(서명)의 경우 : "2" 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 1
⑰기관명 및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명을 기재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종류를 기재 - 국가기관인 경우 : "1" 로 기재 - 상공회의소인 경우 : "2" 로 기재 - 기타의 비국가기관 : "3" 으로 기재 * ⑯번 항목이 "1" 인 경우에만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 Singapore Customs [1]
⑱발급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의 일련번호 기재 * 다만 사전심사서의 경우 발행번호 기재 	SCCOIN200603010001
⑲발급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상의 발급일자 기재 - 기관발급의 경우 : 발급일자를 기재 - 자율증명의 경우 : 서명일자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일자가 2006.3.1인 경우 : 2006/03/01
⑳적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하증권(B/L)상의 선적국을 기재 - 선적국의 국가부호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적국인 싱가포르인 경우 : SG
㉑적출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상의 선적항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출항이 싱가포르 항구인 경우 : Singapore
㉒출항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상의 B/L 발행일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상의 발행일 (Date of issue of B/L)이 2006.3.1인 경우 : 2006/03/01



항 목	작성요령	작성예
㉓환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 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국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출발 일본을 환적한 경우 : JP
㉔환적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 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항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적항이 요코하마 항구인 경우 : Yokohama
㉕환적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 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일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적일이 2006.3.5인 경우 : 2006/03/05
㉖순증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상의 순증량을 기재 -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목이 여러 개일 경우 품목별 증량의 합계를 기재. 다만, 원산지 증명서 에 총증량 또는 수량만 기재된 경우 포장명세서 등을 참고하여 순증량으로 환산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상의 유효유 1,000kg 중 500kg에 대해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 신청하는 경우 : 1,000kg
㉗분할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분할수입 여부를 기재 - 분할수입의 경우 : "Y" 로 기재 - 전량수입의 경우 : "N" 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상의 유효유 1,000kg 중 500kg에 대해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 신청하는 경우 : [Y]
㉘분할차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분할수입신고 차수를 기재 - 최초수입인 경우 : "1" 로 기재 - 3차분인 경우 : "3" 으로 기재 * ㉗번 항목 "Y" 인 경우에만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상의 유효유 1,000kg 중 - 3.10일 500kg - 3.20일 300kg - 3.30일 200kg 대하여 각각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 3.10일 500kg : 1 - 3.20일 300kg : 2 - 3.30일 200kg : 3
㉙재수출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국의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다른 계약상대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여부를 기재 - 재수출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 "Y" 로 기재 - 재수출원산지증명서가 미발급된 경우 : "N" 로 기재 *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재수출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산 물품에 대하여 싱가포르에서 재수출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 [Y]
㉚재수출원산지증명서 발급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수출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국가부호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국이 싱가포르인 경우 : SG

**수입신고 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

-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을 수리전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임을 명시하는 부호인 "A"로 기재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 협정관세 적용요건 심사

- 세관에서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1.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 여부
 2.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이 "A"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3. 원산지과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
 4.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법 제9조2항 및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직접운송원칙 충족여부
 6. 기타 협정관세 적용요건 확인을 위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협정관세 적용

- 세관의 심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협정관세가 적용되어 수입신고를 수리하게 됩니다.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적용신청**■ 수입신고시 수리후 신청 의사표시**

-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가 없어 수리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에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임을 명시하는 부호인 "B"를 기재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 세관장은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임을 확인한 때에는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 대상물품" 인장을 수입신고필증에 날인하여 수입자에게 교부합니다.
- 수입신고필증에 날인된 인장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가능물품임을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 원산지확인**

-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후에 체약상대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본 책자 17쪽에 기재된 '수입자 원산지확인' 절차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작성

- 수입자가 원산지를 확인하고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본 책자 17쪽에 기재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작성'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경정청구(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

- 수입자가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협정관세적용신청서
 2. 경정청구서
 3. 원산지증명서
 4.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자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에 한함.)
 5. 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 세관에서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1. 상기 서류의 구비 여부
 2.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3. 경정청구서 세액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4. 제출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양식 및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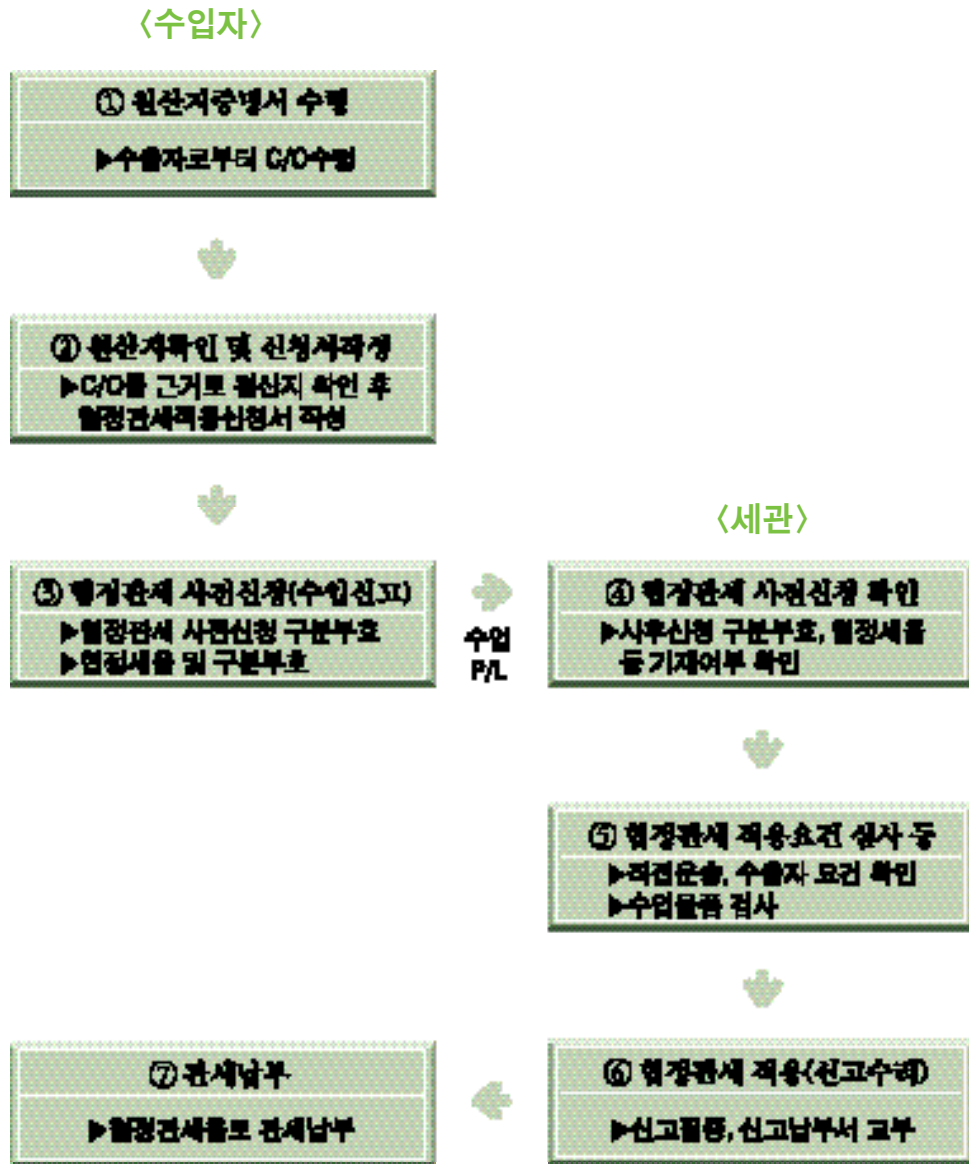
■ 협정관세 적용 및 관세 환급

- 심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자에게 관세를 환급하여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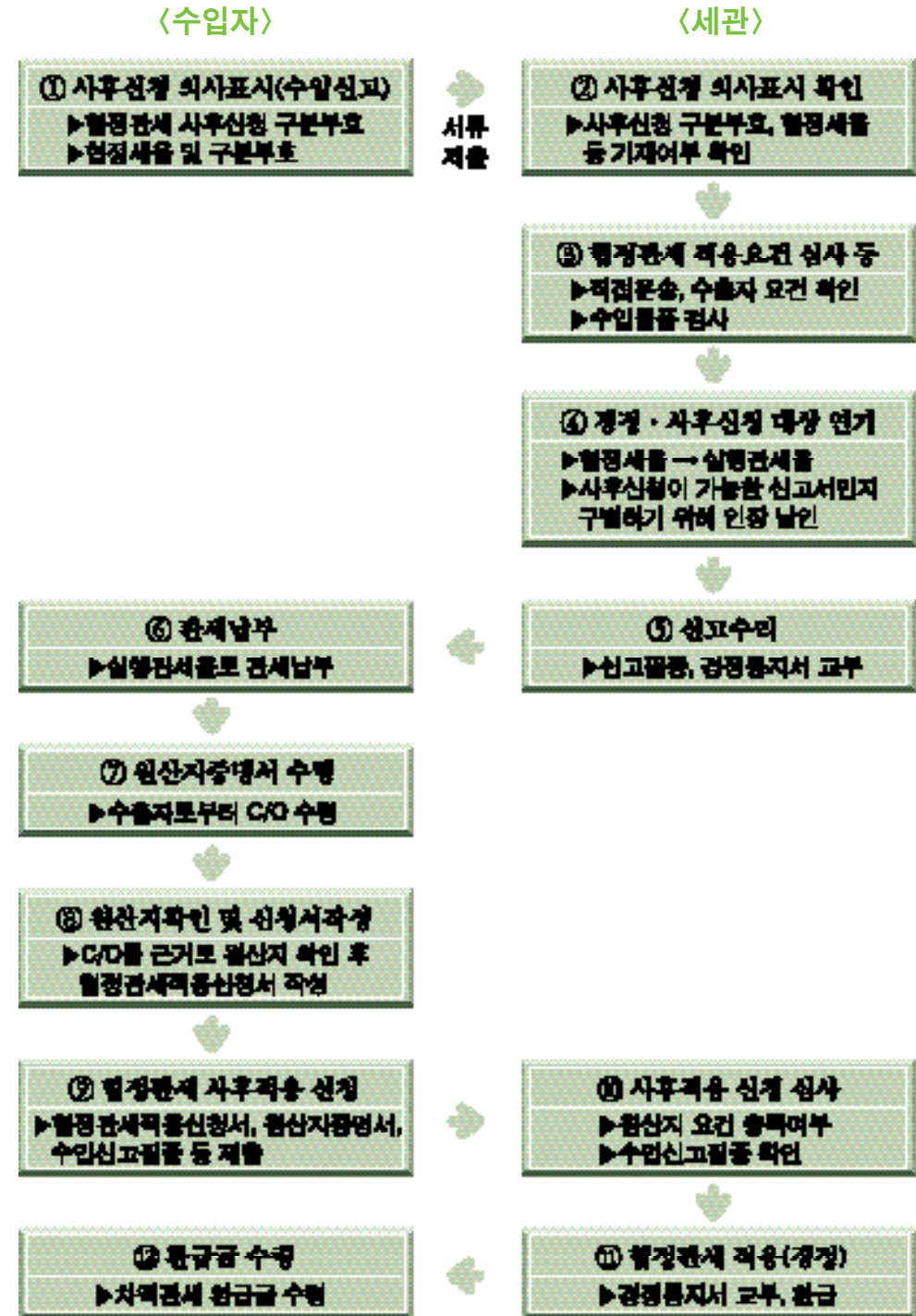


III. 협정관세적용신청 절차도

수입신고 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적용신청





IV. 알아두면 좋은 정보

FTA 문의처

- ❖ 협상 관련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 02) 2100-8110
- ❖ 법령 관련 : 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 ☎ 02) 503-9239
- ❖ 통관 관련 : 관세청 공정무역과 ☎ 02) 481-7642~3
관세종합상담센터 전화 1577-8577

FTA 관련기관 홈페이지

- ❖ FTA 추진현황 및 협정문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게재
 - 협상 등 FTA 추진현황 및 협정문 게재
 - ☞ 협상 등 추진현황(자유무역협정) : <http://www.fta.go.kr/>
 - ☞ 협정문(조약정보) : http://www.mofat.go.kr/mofat/mk_a005/mk_b030/mk_c056/mk_d154/mk05_02_sub06_01.jsp
- ❖ FTA관세특례법령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게재
 - 한-칠레 FTA관세특례법령, FTA관세특례법령 게재
 - ☞ 법령(법령정보)http://www.mofe.go.kr/law/law_00.php?tname=EC0102
- ❖ FTA관세특례고시 및 주요 질의·답변
 - 관세청 홈페이지 게재
 - FTA관세특례고시, 통관절차 등 web-book 및 주요 질의·답변
 - ☞ http://www.customs.go.kr/hp/homepage/dat/PFCS009_01.htm(미정)